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백선희 · 김준형
신장식 · 이해민 · 박은정
서왕진 · 장경태 · 박수현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항공종사자가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(이하 “자격증명등”)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음주 등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, 특히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항공기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종사자를 비롯하여 조종면허가 및 항공교통관제면허를 받은 사람,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을 받은 사람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

은 사람이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 관련 업무 등 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임한 경우 그 자격·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, 항공업무 수행 관련 주류 등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43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5호”를 “제13호, 제15호”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1호”를 “제9호, 제11호”로 한다.

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0호, 제12호”로 한다.

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7호”를 “제5호, 제7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 격증명의 한정(이하 이 조에서 “자격증명등”이라 한다)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6 호의2, 제6호의3, <u>제15호</u>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1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43조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13호, <u>제15호</u> ----- ----- -----.
제47조의2(자격증명을 받지 아니 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·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 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(이하 이 조	제47조의2(자격증명을 받지 아니 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·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에서 “조종연습등”이라 한다)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(이하 이 조에서 “연습허가”라 한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1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14조(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등 ·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(이하 이 조에서 “자격증명등”이라 한다)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

제9호, 제11호

1. ~ 1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4조(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 등 · 항공 신체 검사증명의 취소 등) ① -----

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, typical of primary-ruled notebook paper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.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.

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5호의2, 제5호의3, 제12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1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25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의2, 제3호의3,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⑥·⑦ (생략)

-----.

---제10호, 제12호-----

-----.

1. ~ 1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25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.

-----제5호, 제7호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⑥·⑦ (현행과 같음)